

제 1282 호
1986. 5. 23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영보
편집인: 서울특별시청 영보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소
전화: 731-6111-3
전화: 735-3337

지	보	관	공	공
지	보	관	공	공

시 보

차 례

- ◎ 고 시
제 334 호 :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고시 2
- ◎ 공 고
제 292 호 : K.S표시정지처분태세 3
제 293 호 : K.S표시원아류소 3
- ◎ 사 령

공								
합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34 호

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고시

석유사업법 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6.5.23

서울특별시장

1. 신청절차

주유소의 허가를 받고자하는자는 제출서류(제 3호)를 구하여 관한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하여야 한다.

2. 허가기준

가. 인적제한

- 1) 석유사업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
- 2)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자
- 3) 일반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자

나. 지역제한

- 1) 주유소의 설치 위치는 광화문 원표물 기점으로한 도심반경 5

km 이상 외곽지역으로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

2) 주유소의 담 또는 외벽으로부터 이본주유소의 담또는 외벽까지는 직선거리 1k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3) 주유소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다른주유취급소, 가연성가스의 제조충진소 및 3톤이상 저장시설의 외벽까지 140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
4) 주유소 경계선으로부터 학교경계선까지 200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 관할교육구청장의 설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5) 건축법, 도시계획법, 소방법, 기타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가능할 지역이라야 한다.

다. 시설기준

1) 저장시설 : 40세이상용 저장할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이라야 한다.

2) 주유기 : 4 대이상이어야 한다.

3) 공중이 이용할수 있는 화장실 시설 : 1개소(남, 여 구분되어 있는 면적 10㎡이상)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 43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라. 취급유종

휘발유, 동유 경우에 한한다.

3. 제출서류

가.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 8 조 2 항에 규정된 서류
 나. 토지 등기부 등본
 다. 뽕증된 토지주의 사용승락서(타입토지의 경우에 한한다.)
 라. 인근주유소, 다른위험물 취급시설 및 학교와의거리 측정도면

4. 허가 신청처리
 가. 구청장은 주유소허가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후 처리한다.
 나. 특별한 지역에 적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순위로 처리한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2.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보며 장소이전 허가시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.
 3. 종전의 "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고시(서울특별시 고시 제 343 호 84.6.11)"는 이를 폐지한다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92 호

K.S 표시 정지 처분 해제

1986.2.13 자 (서울특별시 공고 제

88 호)로 K.S 표시 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공업 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6. 5.23

서울특별시청

1. 업체명 : 신광전기 공업사
2. 대표자 : 김 선 철
3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12
4. 규격번호 : K.S.C 8309
5. 규격명 : 육내형 소형 스위치
6. 종류등급 : 플 스위치 1극
7. 해제일자 : 1986. 5.21.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93 호

K.S 표시 허가 취소

공업 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KS 표시허가 취소처분 하얏기 동법시행 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한다.

1986. 5.23

서울특별시청

1. 허가번호 : 제 2917 호 제 2918 호
2. 허가일자 : 1983.1.10 1983.1.10
3. 업체명 : (주)한양상제동 화 동 레미콘공장

4. 소재지 : 도봉구상제 2 동 241 과 동	8. 종류등급 : 무색판 A형 보차도경계분류
5. 대표지 : 배종현 과 동	도로경계분류
6. 규격번호 : K.S.F 4001 K.S.F 4006	9. 처분사유 : 허가증 자진반납 과 동
7. 규격명 : 보도용콘크리트판 콘크리트경계분류	10. 처분내용 : K.S 표시허가취소 과 동

사 령

1986년 5월 22일자

령제 230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위	직급
강석근	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"해 임"에 처함.	강남구	시민국장	지방서기관
김성달	"	종로구	수도관리과장	지방행정사무관

1986년 5월 23일

령제 231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허봉구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부녀청소년과	지방별정직 8급 상 당

서울특별시장